

- 2026년 1차 온가족보듬사업 면접교섭서비스 -

면접교섭 상담위원 모집 공고

성남시가족센터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대한 법률」에 따라 미성년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면접교섭서비스를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2026년 제1차 온가족보듬사업 면접교섭서비스 상담위원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5년 12월 19일

성남시가족센터 인사위원회 위원장

1

위촉분야 및 근무조건

□ 위촉분야 및 직무내용

계약형태	직급	인원	주요업무	비고
위촉직	면접교섭 상담위원	3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면접교섭서비스<ul style="list-style-type: none">상담 · 중재 · 모니터링 진행상담일지 및 종결보고서 등 행정업무직무관련 교육 및 평가회 등 참여	

* 본 위촉직은 당해년도 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근무성적 및 본인의 의사에 따라 1회에 한하여 계약 연장 가능함

□ 보수기준

구 분	보수기준	비 고
면접교섭서비스 상담위원 [위촉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성평등가족부 가족센터 사업안내 지침을 준용<ul style="list-style-type: none">1회기 상담위원 활동비 100,000원 지급보수기준은 근무, 주차 일수 등에 따른 변동 없음	

□ 근무조건

- 근무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탄리로 59, 1층
- 근무시간

구 분	근무시간	비 고
면접교섭서비스 상담위원 〔위촉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접교섭서비스 신청이 접수되는 경우, 1가정 당 최대 12회기 이내 서비스 제공○ 1회 60분~120분 이내 ※ 업무 특성상 탄력적 형태로 근무함 ※ 상황에 따라 야간 및 휴일 근무가 발생할 수 있음	

2

응시자격 및 자격기준

□ 응시자격

- 근무 성적이 불량하거나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 합격 취소할 수 있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구 분	자격사항	비 고
면접교섭서비스 상담위원 〔위촉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수사항<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담관련 전공자로서 면접교섭, 이혼전·후상담 등 관련 상담 활동의 경력이 있거나 면접교섭 상담을 수행 할 자격을 갖춘 자- 아동학대, 노인학대, 성범죄 사실이 없는자○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자 중 관련상담 분야의 1년 이상 근무 경력자- 관련자격 취득자 중 실무경력이 있는 경력자	만 60세 이하 (인건비 보조금 지급 상한기준 적용)

* 관련학과: 심리학, 임상심리학, 정신의학, 사회복지학, 가족치료학, 상담학, 아동학(아동복지학), 교육학, 아동심리치료 등

* 관련상담 분야: 가사재판, 협의이혼 상담 등

* 관련자격: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 1급(상담심리전문가), 한국임상심리학회 임상심리전문가, 보건복지부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보건복지부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1급, 한국가족치료학회 가족치료사 1급, 한국놀이치료학회 놀이치료전문가, 한국모래놀이치료학회 모래놀이치료 전문가, 한국발달심리학회 발달심리 전문가(상담 및 치료영역), 청소년상담사 1급(여성가족부) 등

* 경력사항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 자격기준

- 성평등가족부 가족센터운영 지침 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 센터에서는 센터 직원 및 별도사업 인력 등 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인력에 대해 신규 위촉 시 아동학대 범죄전력조회 및 노인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를 실시하고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함
 - 가족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상 시설장 및 종사자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해 전력조회를 하여야 함

[참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

■ 종사자 결격사유

○ 법 제35조의2 제2항

1. 제19조제1항제1호의7부터 제1호의9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참고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제1항

1. 미성년자

- 1의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1의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1의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1의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1의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1의7. 제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1의8. 제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2. 제26조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그 허가의 취소사유 발생에 관하여 적법적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그 설립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1의9. 제1호의5부터 제1호의8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의3. 제40조에 따라 시설의 장에서 해임된 사람으로서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의4.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모집절차 및 전형일정

□ 전형일정

구 분	전 형 일 정	비고
모집공고	2025. 12. 19.(금) ~ 2026. 1. 4.(일)	17일간
응시원서 접수	2025. 12. 19.(금) ~ 2026. 1. 4.(일)	17일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6. 1. 6.(화)	예정
면접시험	2026. 1. 8.(목)	예정
최종합격자 발표	2026. 1. 12.(월)	예정
오리엔테이션(위촉일)	2025. 1. 15.(목)	예정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전형별 합격자 발표, 면접 장소, 일시 등 관련 사항은 성남시가족센터 홈페이지 <https://seongnam.familynet.or.kr> 알림공간 → 공고 참고

4

세부 전형절차

□ 전형방법: 공개경쟁 위촉

전형구분	전형 방법 및 분야	비고
1차(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원인의 적격성 심사 및 서류전형 	[적격성 심사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시서류 제출 여부 - 응시 자격 기준 적합 여부
2차(면접)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 전형 합격자에 대한 면접전형 	- 1차 전형 합격자에 한함
합격자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형점수 총점 최고 득점자 <p>*총점 동점자 발생의 경우 면접전형 고득점자를 우선 고려하여 결정</p>	
최종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사자 결격사유 조회 시 미해당자 	

가. 원서접수

- 접수기간: 2025. 12. 19.(금) ~ 1. 4.(일) 18:00까지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snfc_counsel@daum.net 성남시가족센터 가족성장팀
 - ※ 모든 서류는 반드시 센터 소정양식 사용, 직접 서명(또는 도장 날인) 후 스캔하여 하나의 파일로 송부(파일명: 면접교섭 상담위원-지원자성명)
 - ※ 메일 제목은 ○○○ 응시원서(면접교섭서비스_상담위원) 예) 홍길동 응시원서(면접교섭서비스_상담위원)로 작성하여 발송
 - ※ 마감시간 이후 도착분 접수 불가 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한 기간 내 미접수는 지원자 책임(사전접수 권장)
 - ※ 접수 시 지원자는 응시원서가 정상 접수되었는지 확인필수 (☎031-756-9327, 내선2)

□ 응시원서 접수 시 필수 제출서류

구분	제 출 서 류	비 고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응시원서(붙임1)○ 자기소개서(붙임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붙임3)○ 관련학과 졸업증명서 또는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자격증 사본	붙임1~3 소정 양식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중 택1<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자료 제출- 직위, 직무, 근무기간(월이 아닌 일자까지 표기) 필수 기재	

※ 응시원서, 경력증명서 날짜는 모두 일치해야 함
※ 해외에서 발급한 서류는 번역 공증 후 제출

〈응시원서 제출 시 유의사항〉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시 인적 사항(학력, 출신지역, 가족관계 등)과 관련된 일체의 내용 제외 후 기재해야 함
-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하여야 하며,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등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폐업인 경우, 폐업 사실증명원을 임용 시 별도 제출해야 함. 해당서류 미제출 시 자격 및 경력사항 인정이 불가하고 허위사실 기재 시 임용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음
- 경력기간 중 시간강사 등 부수적인 겸직 사항은 제외
- 응시원서의 경력 근무일자와 증명서의 일자가 다른 경우 증명서를 우선으로 하며, '월' 만 기재한 경우 '일' 은 1일로 계산
- 최종합격자 제출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일에 별도 공지함

나. 최종합격자 발표

- 합격자 발표: 2026. 1. 13.(화) 성남시가족센터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문자 연락
※ 면접전형 대상인원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등본○ 범죄경력조회동의서(소정양식)○ 병적증명서(남자 병역필자는 주민등록 초본으로 대신함)○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5

유의사항

-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심사 실시일 7일 전까지 센터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 응시원서 기재 내용의 착오. 누락, 연락 불능 또는 제출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에게 있으며, 응시원서 접수 및 증빙서류 제출과정을 통하여 허위사실 기재 또는 허위증빙서 제출 시, 합격 또는 임용의 취소 및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 합격된 후에라도 위촉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 전형에서 동점자 발생 시 면접전형 고득점자 합격이 우선 고려됩니다.
- 제출한 서류는 본 위촉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 이내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구직서류를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최종 합격자의 서류는 기관에서 보관

- 청구기간 경과 후에는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의 제출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제21조제1항) 및 채용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4항)에 따라 지체없이(5일 이내) 파기한다.

※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

※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

- 임용후보자가 임용이 되지 않는 경우 또는 소수의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에 공개

위촉에 따른 불필요한 업무공백, 경비지출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순위 합격자에 대하여 자격, 서류·면접시험 등의 결과를 판단하여 별도 임용할 수 있습니다.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위촉에 있어서 어떠한 청탁도 받지 아니하며 청탁사실이 발견될 경우 응시자격이 박탈됩니다.
- 합격자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 후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위에 제시한 내용 이외의 사항은 성남시가족센터 인사규정에 따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가족센터(☎031-756-9327, 내선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응시원서

2. 자기소개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4. 이의제기신청서
5. 서류반환청구서

[붙임 ①]

성남시가족센터 면접교섭 상담위원 응시원서

접수번호			지원분야	면접교섭 상담위원				
성명			성별					
생년월일								
취업가능 연령	법정 취업가능연령(만 19세) 이상입니까? (해당되는 곳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하시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주소 (우편번호) (현거주지)								
연락처	전화번호	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직무관련 학교교육	학교명	학위	전공	부전공	재학기간		졸업여부	
	00대학교				년 월 ~ 년 월	졸업/재학/수료		
	00대학원				년 월 ~ 년 월	졸업/재학/수료		
	00대학원				년 월 ~ 년 월	졸업/재학/수료		
직무관련 총 경력 (년 개월)	근무처	직위	담당 업무(직무내용)			근무기간(연,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자격증 및 특기사항	관련 자격증	자격사항		발행처	취득일			
					(년 월 취득)			
					(년 월 취득)			
					(년 월 취득)			
					(년 월 취득)			
기타사항 *병역여부, 수상 등								
활동 가능 한 일정에 모두 체크해주세요 (✓ 표시)	요일/시간	월	화	수	목	금	토	비고
	09:00~13:00							
	13:00~18:00							
	18:00~21:00							

본인은 성남시가족센터 면접교섭 상담위원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

(서명/인)

※ 이상과 같이 본인은 성남시가족센터 면접교섭 상담위원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상기 기재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는 등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 응시원서를 제출함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관련)

[붙임 ②]

자 기 소 개 서

응시직급	면접교섭 상담위원	성 명	
상담 수련 동기			
면접교섭 관련 주요 활동 사항			
면접교섭 상담위원 지원동기			
상담위원 활동을 통해 얻고자 하는 점			
<p>※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등을 암시하는 내용(인적사항) 기재 금지</p> <p>※ A4용지 3매 이내로 본인이 직접 작성 바랍니다.(대리 작성, 허위 작성시에는 합격 취소 등 불이익 부과)</p> <p>본인은 상기 사항에 허위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p>			
20 년 월 일			
작 성 자 : (서명)			

[붙임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응시자용)

성남시가족센터 귀하

귀 센터의 모집절차와 관련하여 귀 센터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3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 센터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촉 제한사유 해당여부, 심사 관련 확인■ 제출서류(경력증명서, 자격증 및 기타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활용■ 성남시가족센터 서류 및 면접심사 활용(응시원서 기재내용)
수집·이용할 항목	<p>【필수적 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식별정보<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메일 주소 등 연락처■ 자격·경력사항 정보, 병역사항 정보 등 위촉관련 정보 <p>【최종 합격 시 수집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종 합격 시 센터에서 수집하는 정보<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번호, 경력사항, 자격사항, 학교교육과정사항, 특별사항(병역, 장애, 보훈사항) 등- 성범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등에 관한 정보 등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위촉절차 종료 시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위촉절차 종료 후에는 민원처리, 분쟁해결 및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위촉 심사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위촉절차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위 개인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일정이 지연되거나 위촉심사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고, 우대자격 인정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집·이용 동의 여부	<p>귀 센터가 이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적 정보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 선택적 정보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고유식별정보 동의 여부	<p>귀 센터가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유식별번호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최종합격시)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민감정보 동의 여부	<p>귀 센터가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감정보 : 병력사항관련 정보, 성범죄 경력정보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정보 <p style="text-align: right;">(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p>

2.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 받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증 진위 확인기관 : 자격증·면허·어학 등 자격증검증 기관 ▪ 민감정보 관련 진위 확인기관 : 성범위 경력정보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정보 검증기관 ▪ 기타 심사관련 진위확인이 필요한 기관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증 진위 확인기관 : 자격증·면허·어학 등 자격증 진위 확인 ▪ 민감정보, 심사관련 진위확인기관 : 성범위 경력정보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확인 ▪ 기타 심사관련 진위확인
제공할 개인(신용) 정보의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증 진위 확인기관 : 개인 식별정보 등 자격증 진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정보 ▪ 민감정보, 심사관련 진위확인기관 : 성범위 경력정보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확인을 위해 필요한 정보 ▪ 기타 심사관련 진위확인을 위해 필요한 정보
제공받은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이용기간	위 개인(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단, 지원자가 근로계약 체결을 거절한 경우에는 민원처리, 분쟁 해결,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p>위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는 위촉에 대한 원활한 진행 및 향후 근로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모집절차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제3자 제공 미동의시 입사지원서 허위사실 기재로 인한 불이익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p>
동의여부	<p>센터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식별·민감)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본인이 서명 날인한 동의서 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효력이 있음에 동의합니다.</p> <p>(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p="" type="checkbox"/> </p>
고유식별 정보 동의여부	<p>센터가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 식별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p> <p>(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p="" type="checkbox"/> </p>
민감정보 동의여부	<p>센터가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민감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감정보: 장애여부 및 내역, 건강 관련 정보, 신원조회 정보, 성범죄 경력정보 및 아동학대 관련 정보, 건강정보, 병력사항 정보 <p>(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p="" type="checkbox"/> </p>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제공·이용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卷之三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남시가족센터장 귀중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붙임 ④]

이의제기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성명	직급
주 소		
답변수신장소 및 방법	<input type="checkbox"/> 이메일	
	<input type="checkbox"/> 우편	
이의제기 사유	(육하원칙에 의해 자세히 기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위의 모집결과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남시가족센터장 귀하

공지사항

- 이의제기 신청 시 7일 이내(휴일 제외) 답변을 송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답변 기간 연장될 수 있음)
- 답변을 우편으로 수령하고자 하는 때에 발생하는 비용을 신청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바라며, 시험 불합격과 관련한 이의신청만 작성바랍니다.
- 문의 및 질의사항에 관한 사항은 답변하지 않습니다.

[붙임 ⑤]

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직급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상담위원 모집관련 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성남시가족센터장 귀하

공지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상담위원 모집관련 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 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상담위원 모집관련 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